

기사제목을 별도의 기사로 보아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47501 판결

장윤미 법무법인 원앤원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은 2007년 9월경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수상한 남녀들의 오만방자 폭로담』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탁 전 행정관 포함 2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이 자신의 성적 취향과 이성 관계 등을 주제로 7개월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 후 그 내용을 대화집 형식으로 엮은 책이었다.

이 책은 출간 후 10년쯤 지난 2017년 5월경, 탁 전 행정관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2급)으로 발탁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 책에 나온 탁 전 행정관의 대화내용이 그의 왜곡된 성(性)인식과 여성관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특히 탁 전 행정관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언급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탁 전 행정관은 해당 부분에서 ‘상대 여학생은 친구들이 성관계 대상으로 공유했던 쿨한 여자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위 책의 내용과 관련해 탁현민 전 행정관이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여론이 계속됐고, 탁 전 행정관은 2017년 7월 1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책에 언급된)

여중생에 대한 말은 전부 픽션이다”라고 말했다.¹⁾ 실제 탁 전 행정관은 이 책의 출판 당시 책의 에필로그에서 “대부분의 수다가 그러하듯 실컷 쏟아낸 말들 중에는 때로는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다소 과장하거나 아예 숨긴 것들도 있다”고 적기도 했다.

탁 전 행정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던 중 호주 시드니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여성은 2017년 7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체공개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글은 이 여성이 유년 시절 겪었던 성폭력 경험을 언급하면서 상처를 떠올리게 한 탁현민 전 행정관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작성인이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속에 등장하는 그 ‘여중생’은 아니었다.

여성신문사는 위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7월 25일 이 여성에게 인터넷 신문에 게재를 허락받고 ▲ 이날 여성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고]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해당 글을 게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 ▲ 여성신문사 트위터 계정에 위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를 링크하면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 너무나 아픈 상처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제 스스로도 애써 잊고 살려 했지만...이렇게 털어놓아 봅니다.”라는 문구가 노출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트위터 기사’).

이에 탁현민 전 행정관은 2017년 7월말경 위 두 건의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기고글의 ‘제목’이 마치 탁 전 행정관을 성폭행범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다. 탁 전 행정관의 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심 법원은 1,000만 원을, 2심 법원은 1심의 절반인 500만 원을 각 인정하였고, 항소심 선고 이후 원·피고 양측 전부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심 판결은 2019년 11월경 확정되었다.

2. 대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7460, 2018나47501 각 판결

가. 쟁점

이 사건의 특징은 원고가 언론사의 자체 기사가 아닌 외부 기고글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기고글의 ‘내용’ 보다는 언론사가 붙인 ‘제목’을 명예훼손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는 데 있다. 통상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해당 언론사의 소속 기자가 취재해 작성한 기사를 문제 삼고, 제목보다는 기사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김원진·유수빈 (2017, 7, 14). [단독] 탁현민 인터뷰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가 물러날 때.”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7131908001



탁 전 행정관이 여성신문사가 붙인 제목을 문제 삼으면서 펼친 주장의 요지는, 인터넷 언론의 특성상 독자 대부분이 기사의 제목을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탁현민의 그 여중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압축적인 표현의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인 보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 여성신문사가 외부 기고글을 그대로 기사화하면서 제목을 게재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것인지, ▲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있고,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한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나. 1심 판결의 요지 및 판단의 근거

1심은 여성신문사가 자신의 홈페이지 및 트위터에 기고글을 게시하며 붙인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은 그 자체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별개의 독립된 기사에 해당한다며 탁 전 행정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기사의 제목은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파악해야지, 제목만 따로 떼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외가 있는

데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제목의 게재행위 자체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1심은 위 판례를 참조하여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은 본문 내용과 현저히 동떨어져 그 자체로 충분히 허위사실을 기재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기고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기고자가 자신이 중학생 때 성폭행 당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탁 전 행정관에게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책을 펴낸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인어서, 기고자가 책에서 언급된 여중생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와 동떨어진 제목을 붙여 결과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본문 기사 역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일반 독자들이 주의를 갖고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으면 기고문의 기고자가 탁 전 행정관의 책에서 언급된 여중생이라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면서 제목과 본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1심은 공공의 이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을 경우 기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성신문사로서는 탁 전 행정관의 책 속의 여중생이 기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2심 판결의 요지 및 판단의 근거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와 트위터 기사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였는데, 홈페이지 기사의 경우 제목과 본문기사 둘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심은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와 관련해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을 게재한 것은 언뜻 보기에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 기고자가 성범죄 피해 여성들과의 연대의식을 표현하는 기고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러한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이는 점, ▲ 기고자가 사용한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제목 앞 부분에 “[기고]”라고 덧붙인 점 등을 근거로,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전혀 별개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1심과 달리 본문의 내용과 제목이 관련성이 있어 제목을 독립된 기사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2심은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도, ▲ 여성신문사가 외부 기고글임을 밝혔고, ▲ “내가 ○○○”라는 표현은 범죄 피해자 등 사이에서 연대의 의사로 통용되는 문구이며, ▲ 일반 독자들이 해당 기사를 보고 제목과 본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



다는 취지로 비판을 한 점에 비추어보면, 독자들이 위 홈페이지 기사의 기고자를 책 속의 여중생으로 받아들였다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위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탁 전 행정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2심은 이 사건 트위터 기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40자 이내의 글자만 게시가 가능한 트위터의 특성상 여성신문사는 트위터 계정에 기사를 올리면서 기고글의 내용을 편집, 가공하였는데,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내용은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 너무나 아픈 상처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제 스스로도 애써 잊고 살려 했지만...이렇게 털어놓아 봅니다.”라는 것이었다.

2심은 트위터의 글자 수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여성신문사가 기고문 중 위와 같은 부분만 발췌, 인용한 것은 ‘탁 전 행정관이 책 속의 여중생과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트위터 기사에 등장한 기고자가 그 여중생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탁 전 행정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1심이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와 트위터 기사 전부 허위사실을 기재해 탁 전 행정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데 반하여, 2심은 트위터 기사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아 1심이 인용한 손해배상금의 절반인 500만 원을 인정하였다.

3. 검토

여성신문사가 붙인 제목과 관련해 1심은 그 제목의 문언적, 객관적 의미에 더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사본문을 읽어보면 기고자가 책 속의 여중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고 제목을 단 것은, 제목이 기사본문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을 넘어 기고자를 그 여중생으로 오인하도록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까지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위 제목의 문구 자체의 의미보다 제목과 조응하는 이 기사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제목을 허위사실로까지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문 내용을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 조금만 읽어 보아도 위 제목은 수사적 의미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읽고, 책에서 언급된 여중생과 기고자를 동일 인물로 오인한 독자가 얼마나 됐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당시 인터넷 상에서는 제목과 본문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독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2심이 언급한 대로 ‘나는 ○○○이다’라는 문구는 범죄 피해자, 소수자 등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언적 의미의 구호이고, 위 제목은 이를 차용해 작성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나아가 위 제목의 문구는 여성신문사가 가공한 것이 아니라 기고글의 첫 머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목 자체를 허위사실로 적시한 1심 판단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더구나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기사가 아닌 외부 기고글을 그대로 게재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까지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고글의 경우 언론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독자로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 기고글을 허위로 단정지으며, 이를 그대로 게재한 언론사에게까지 명예훼손 책임을 묻게 되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신문사가 제목을 붙이는 데 다소 경솔했던 잘못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1심이 제목의 문언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제목과 본문의 불일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한 점은 아쉽다고 생각된다. 항소심에서 제목 자체의 선언적 의미 등 그 맥락을 살펴 1심 판결을 변경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1, 2심 모두 이 사건 트위터 기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는데, 언론사들이 트위터 계정 등 SNS에 기사를 게시하는 일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법원이 하나의 지침을 제시하였다고 보여진다. SNS상의 글자 수 제한을 감안하더라도 기사의 내용이 왜곡되도록 임의로 축약, 가공해서는 안된다는 기준은 앞으로 참조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